

문서번호	공공자전거운영처-204
보존기간	준영구
결재일자	2021.01.07.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이사장 방침 제 1호

★과장	팀장	공공자전거운영처장	교통사업본부장	이사장
협 조	팀장			
	팀장			

공공자전거운영및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21. 1.

공공자전거운영및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 안 요 지)

1. 개정이유

소형 공공자전거 ‘새싹따릉이’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자전거 이용연령 하향 조정에 따라 「공공자전거운영및관리규정」〈제1장 총칙〉 및 〈제2장 공공자전거 이용〉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싹따릉이 도입에 따른 용어 재정의 (제3조)

- “일반따릉이”와 “새싹따릉이” 유형별 이용자를 신장 기준으로 구분

나. 제5조의 제목 “이용”을 “공공자전거의 이용과 공단의 책무”로 개정

- “새싹따릉이” 도입에 따른 따릉이의 이용 기준과 공단의 책무에 대해 명확히 규정

다. 공공자전거 이용연령에 대한 조항 개정 (제5조)

라. 공공자전거 이용 시 회원가입 필수 대상을 만19세 미만인 자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자로 내용 개정 (제5조)

마. 공공자전거 회원가입 보류 및 거부 대상에 대한 조항 개정 (제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규정관리규정 제7조(입안) 및 제10조(절차) 등
- 새싹따릉이(가칭) 시범 도입·운영 추진계획(市 자전거정책과-5089, 2020.4.29.)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절 차 : 이사장 방침 후 공포·시행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공공자전거운영및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공자전거운영및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일반따릉이”란 24인치 바퀴 크기로 제작된 자전거로, 통상 160cm 이상의 신장을 가진 시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8. “새싹따릉이”란 20인치 바퀴 크기로 제작된 자전거로, 통상 160cm 미만의 신장을 가진 시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공자전거의 이용과 공단의 책무)

- ① 공공자전거는 만 13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제3조에서 규정하는 키(신장)의 구분에 따라 이용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연령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 3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함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한 만14세 미만 아동은 사전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관련하여 공단은 통상 160cm 미만의 신장을 가진 시민이 새싹따릉이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만14세 미만의 아동이 그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가입신청자가 만13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0.11.30.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6조(회원가입 보류 및 거부)</p> <p>① (생 략)</p> <p>② (생 략)</p> <p>1. ~ 2. (생 략)</p> <p>3. 만15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p> <p>4. 가입신청자가 만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p>	<p>제6조(회원가입 보류 및 거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한 만14세 미만의 아동이 그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p> <p>4. 가입신청자가 만13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p>